

## 난민통역의 쟁점들\*

이 향  
(한국외대)

### 1. 난민통역, 우리의 문제가 되다

2018년 상반기, 말레이시아에 체류 중이던 예멘 난민 500여 명이 제주도로 입국<sup>1)</sup>하여 난민심사를 신청하면서 정부의 ‘부실한’ 난민심사, 특히 심사과정에서의 통역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표준 아랍어가 아닌 예멘식 아랍어를 사용하는 예멘 난민들의 심사를 제대로 소화해 내기에 난민통역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경험은 여러모로 부족했다. 이재호(2018. 7. 23.)는 “난민을 불법취업자로 둔갑시키는 통역사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간 누적되어 온 난민통역 문제를 고발한다. 기사에 따르면 2015년 입국해서 난민 신청을 한 수단인 A의 난민 면접조서에는 “일을 하고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했다”는 엉뚱한 내용이 적혀있었으며, 통역사는 한글로 작성된 면접 조서의 내용을 A에게 설명해

---

\* 이 연구는 2022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1) 예멘 난민의 대거 입국은 일련의 상황 변수가 조합된 결과였다. 사드(THAAD) 논란으로 제주도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던 상황에서 제주도청이 2017년 12월 쿠알라룸푸르와 제주국제공항을 잇는 직항노선을 유치하였고,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에 체류 중이던 예멘 난민 다수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오게 된 것이다(김호천 2017. 12. 3.).

주지도 않았다. 이 통역사가 작성한 다수의 난민면접조서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난민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하여 밝혀낸 바에 따르면 해당 통역사와 조사관이 왜곡한 난민조서는 19건이나 되었다. 기사에서는 다수의 통역에 투입되어 문제를 일으킨 ‘통역사 장씨’가 “난민 전문통역사도 아니고 아랍어를 이중 전공하는 서울 시내 한 사립대학교 학생”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난민심사 혼드는 깡통 통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민도(2019. 12. 2.)는 법무부가 수행한 ‘난민전문통역인 자격 검증 및 난민통역 품질관리 방안 연구’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법무부 난민심사에 투입되는 아랍어 통역인<sup>2)</sup>이 난민 통역인 평가에서 수니파를 시아파로 통역한 사실을 언급한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현직 난민통역인 10명 중 7명은 난민통역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한다. 이 기사의 요지는 그간 전문성이 부족한 통역사들이 난민심사에 투입되어, 중요한 정보는 누락시키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거나 왜곡하여 공정한 난민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sup>3)</sup>

우리나라는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하고 2013년부터 시행해 왔다. 난민법 14조에서는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난민전문통역인’을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전문통역인 양성 프로그램 자체가 존재하지 않던 당시 국내 상황에서 법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다. 사실 예멘 난민의 입국 전까지 난민통역의 문제, 아니 난민 문제 자체는 남의 나라 얘기였다.

난민통역 관련하여 불거진 일련의 문제들을 지켜보며 통역사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 이상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통역을 한 통역사를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한 개인의 삶, 더

- 
- 2) 난민통역 관련하여 ‘통역인’이라는 명칭이 종종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역사’로 통일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원저자가 사용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 3)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 난민과에서는 이례적으로, 이 기사에서 언급한 통역 오류가 실제 발생한 사례가 아니라 ‘난민전문통역인 자격검증’ 연구용역에 따른 평가과정의 일례임을 해명하는 설명자료를 발표했다(법무부 난민과 2019. 12. 5.).

나아가 생사의 문제가 걸려 있는 난민통역에서 통역사의 책임은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난민통역을 둘러싼 포괄적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현 상황을 개선하기는 어렵다. 문제가 된 예멘 난민통역의 배경에는 비전문가가 수행할 수밖에 없는 지역사회통역(Community Interpreting)<sup>4)</sup>의 구조적 문제, 지나치게 낮은 통역료, 구사자가 부족한 소수어, 회소어의 현실, 국제회의통역 연구에 편중되어 온 통역학<sup>5)</sup>의 한계, 권력 불균형(power imbalance) 상태에서 진행되는 대화통역의 특수한 양상들, 난민/이주민들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앞서 언급한 ‘강통 통역’은 이 모든 요소가 상호작용한 결과일 뿐이다.

난민통역이라는 복잡하고 특수한 통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은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주제들이고, 본 연구에서 이를 모두 깊이 있게 고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난민통역이 제기하는 몇 가지 쟁점을 정리하면서 이 특수한 통역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환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난민통역 관련한 그간의 논의를 개괄하고 그 한계와 공백을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난민통역 고유의 특징과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 4장에서 향후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4) Community Interpreting과 함께 Public Service Interpreting(PSI), Liaison Interpreting 등의 명칭이 혼용된다. Community Interpreting은 공동체 내부의 서로 다른 거주민 간의 통역이라는 점에, Public Service Interpreting은 주로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목적의 통역이라는 점에, Liaison은 관공서와 이주민, 혹은 사회 내의 지배층과 소수층 간의 ‘연결’에 초점을 맞춘다. 본 논문에서는 강지혜(2009)를 참고하여 Community Interpreting을 ‘지역사회통역’으로 옮긴다.

5) 통역학(Interpreting Studies), 번역학(Translation Studies), 통번역학(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통역연구(Interpreting Research), 번역연구(Translation Research) 등의 명칭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난민통역에 집중하는 본 연구의 맥락상 통역을 연구하는 학문과 번역을 연구하는 학문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통번역을 공히 연구하는 학문을 통번역학으로, 통역을 연구하는 학문을 통역학으로, 번역을 연구하는 학문을 번역학으로 칭한다. 통역연구와 번역연구의 접점 및 간극에 대한 흥미로운 논쟁은 샤프너(Schäffner 2004)를 참고한다.

## 2. 난민통역, 어떻게 연구되고 무엇이 누락되었나?

난민통역은 처음부터 통번역학의 핵심 화두는 아니었다. 2009년 한국어로 번역된 『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의 영어 초판이 출간된 1998년만 해도 ‘Community Interpreting’이라는 표제어 하에 법정이나 이민국의 통역이 언급되었을 뿐 난민 관련 표제어는 없었다. 그러나 이 사전의 개정판에 이르러 ‘Asylum’<sup>6)</sup>이 표제어로 추가되었으며, 2020년 출간된 재개정판에서 이 표제어는 다섯 페이지 분량으로 상세하게 설명된다(Baker 1998; Inghilleri 2009; Inghilleri and Maryns 2020).

통번역학에서 난민통역<sup>7)</sup>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통역 안에서 다루어진다. 따라서 난민통역 관련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사회통역 연구의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통역은 병원, 경찰서, 법정, 관공서 등 지역사회 내에서 이주민을 위해 제공되는 통역을 지칭하지만, 경우에 따라 국제회의통역 외의 모든 통역을 통칭하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Hale 2007: 28). 베이커가 지적하듯 초기의 통역학은 주로 회의통역(conference interpreting) 연구, 다시 말해 전문가가 수행하는 동시통역 연구에 집중했던 것이 사실이다(Baker 2006: 111). 그 결과 국제회의통역이 아닌 모든 종류의 통역은 지역사회통역이라는 개념 아래 몽땅그려 다루어져 왔던 것이다. 크로닌은 통역학이 회의통역 연구에 주력한 이유를 “통역학의 지정학(geopolitics of Interpreting Studies)”이라는 표현을 들어 설명한

6) 본고에서는 편의상 난민(refugees)과 비호신청인(asylum seekers)을 구분하지 않고 ‘난민’으로 통칭하지만, 엄밀히 말해 비호신청인과 난민은 법적으로 다르다. 비호신청인이 일정 심사를 통과해야 난민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7) 통번역학 외부에서 난민통역의 문제를 다룬 연구는 드물다. 본고의 맥락에서 중요한 연구로 김슬기(2013)와 이주희(2020) 정도를 언급할 수 있다. 김슬기(2013)는 난민심사 과정을 ‘난민입(refugeehood)을 증명하는 문화간 의사소통’으로 보고 이 소통에 가담하는 활동가, 커뮤니티통역인, 난민신청인이 통역을 매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면담기록을 통하여 분석한다. 이주희(2020)는 출입국항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아랍어권 화자 두 명을 대상으로 한 면담을 통해 공항 난민의 언어 권리가 존중되지 않는 현실을 기술하고, 이들의 언어권을 보장하기 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을 한다.

다. 국제회의통역의 최대 시장은 브뤼셀, 제네바 같은 선진국의 대도시였으며, 통역을 연구하는 연구센터의 핵심적 후원 기관 역시 이러한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통역학은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유형의 통역 중 지극히 작은 부분인 동시통역 연구에 치중하게 되었으며, 개도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편중된 연구, 선진국 내에 존재하는 난민, 이주민 등의 소수자를 끌어안지 못하는 연구가 되었다는 것이다(Cronin 2002: 389-390).

회의통역 연구에 치중해 온 전통 통역학에 반기를 들고 시작된 지역사회통역 연구는 미국, 스웨덴, 호주, 캐나다 등 이민자가 많은 국가 중심으로 90년대 부터 꾸준히 발전해 왔다. 미국의 법정통역 실태를 연구한 버크 셀리그슨(Berk-Seligson 1990), 캐나다 난민심사 기록을 토대로 난민신청인과 심사자 사이의 문화적 차이와 소통 문제를 연구한 바스키(Barsky 1994), 스웨덴 이민국에서의 면담 통역을 토대로 통역사의 역할, 개입, 상호작용 등을 관찰, 분석한 바덴쇼우(Wadensjö 1998) 등이 대표적 연구자로 언급된다.

지역사회통역 연구는 지난 30여 년간 통역학의 성격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Hermans 2009: 94). 이제 국제회의장이 아닌 경찰서, 병원, 관공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통역 연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학자는 없다. 기존 통역 연구와 거리를 두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사회통역학(Community Interpreting Studies)’을 말하는 학자도 있다(Rudvin 2007: 47). 난민통역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바로 이러한 통역 연구의 확장, 다변화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간 국내에서 진행되어 온 지역사회통역 연구의 특징을 이상의 맥락을 염두에 두고 난민통역 중심으로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지역사회통역의 중요한 두 축은 사법통역<sup>8)</sup>과 의료통역이다. 난민 관련 통역 중 난민면담, 행정소송 등 법률적 지원이나 절차에 해당되는 것은 사법통역의 영역에서 언급되었다(이지은 2017: 70). 사법통역이라는 큰 틀 안에서 난민 재판과정의 녹음자료를 분석하여 통역 품질을 고찰한 이지은(2012a)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난민, 이주민을 대상으

8) 법정통역, 재판통역, 사법통역 등 여러 개념이 구분 없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사법통역(legal interpreting)을 수사단계에서 소송단계까지 통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법정통역(court interpreting)은 공판 및 공판 준비와 직접 관련된 통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한다(이지은 2012b: 29).

로 한 의료서비스 문제를 논한다면 그것은 사법통역이 아닌 의료통역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9)

둘째, 사법통역의 범주에서 난민통역이 언급될 경우 종종 ‘다문화사회’라는 또 다른 주제와 연결된다. 이지은(2012b: 13-14)은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의 증가로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외국인 피고인이 급증하고 있고, 난민지위 인정과 관련된 행정소송 및 난민인정불허처분 소송 건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법통역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다문화사회라는 맥락 안에서 지역사회 통역을 고찰한 다른 연구들로, 이주민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지역사회통역을 고찰한 강지혜(2009),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통역사로서의 잠재력을 고찰한 장애리(2014)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통역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화두는 통역사의 전문성 제고 문제이다. 국제회의통역과 달리 지역사회통역에 투입되는 통역사의 상당수가 통역교육을 받지 않은 비전문가이고, 이로 인해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과 인증을 통해 이들을 전문직업인으로 양성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가 분명하다. 실제로 국내 사법통역 관련 연구의 다수는 법정통역사 양성의 필요성, 그리고 이에 따른 교육, 인증, 평가 프로그램의 개발 문제로 수렴된다. 법정통역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진아(2008), 법정통번역 교육과정 설계 문제를 다룬 정혜연(2009), 사법인과 통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법통역의 규범에 대한 인식을 고찰한 이지은(2011), 사법통역 교육의 필요성을 논한 이지은(2017)과 홍서연(2018), 사법 통번역 인증평가 사례를 연구한 정철자(2020) 등이 대표적이다. 논의 과정에서 지역사회통역사를 선발, 양성, 교육하는 시스템을 일찍부터 갖춘 호주, 스웨덴 등의 사례<sup>10)</sup>가 모델로 제시된다.

이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난민통역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역사

9) 난민통역과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의료통역 역시 국내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의료통역사 교육 및 교재내용 구성과 관련한 연구로는 광중철(2010), 정철자(2015), 의료통역의 개념 및 연구 동향에 대한 연구로는 김순미(2018) 등을 언급할 수 있다.

10) 스웨덴은 이미 1968년 지역사회통역사 교육과정을 개설했으며 1976년부터는 국가 자격인증제를 도입했다. 한편 호주는 1977년부터 NAATI(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ion and Interpreters)가 20개 이상 언어 조합에 대한 지역사회통역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Inghilleri 2009: 46).

회통역 안에서 사법통역, 이주민(다문화사회), 통역사 양성, 인증,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관점에서 직, 간접적으로 언급되어 왔다. 그런데 난민통역을 중심에 두고 지역사회통역 관련 논의들을 고찰하면서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져볼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통역에서 난민과 이주민을 하나로 묶어 접근하는 데서 오는 문제는 없는가이다. 물론 난민과 해당 국가의 이주민 공동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조하고 교류하게 된다. 그러나 유엔난민기구에서는 보다 나은 경제적 기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경을 넘는 이주민(migrant)과,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없기에 국제법상의 비호 대상이 되는 난민(refugee)을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유엔난민기구 2016. 8. 30.). 난민심사청구인이나 공항난민은 이미 지역사회로 들어와 있는 이주민과 법적으로 분명 다른 지위에 있다(박순용, 서정기, 박진숙 2020). 게다가 지역사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공항 난민, 비호신청자는 지역사회의 바깥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sup>11)</sup> 따라서 난민의 특수한 지위에 대한 고려 없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통역 연구를 난민통역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난민통역을 사법통역의 틀로 접근할 경우 누락되는 것은 없는가의 문제이다. 난민재판을 법정통역, 사법통역의 각도에서 접근하다 보면 ‘난민’이라는 대상보다는 ‘법정’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법통역은 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통역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다. 가령 난민을 일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가(겸 통역인)들이 수행하는 통역, 가족을 돕기 위해 통역에 동원되는 난민 아동의 문제 등은 사법통역의 영역 밖에 있다. 정확성이 무엇보다도 중시되는 난민재판의 통역과, 주로 면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여타의 통역에서 통역 방식이나 통역사의 역할이 동일할 수는 없다. 법정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난민통역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난민통역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비전문가의 질 낮은 통역’ 문제로 보

11) 이러한 개념상의 혼란은 의료통역 관련 논의에서도 확인된다. 국내에서 ‘의료통역’이라는 말 자체가 국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통역과 상업적 의료관광통역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방식으로 종종 사용되지만, 국내에 정주하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구매, 소비하고 귀국하는 의료관광객을 지역사회 일부로 볼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관련 논의는 김순미(2018)를 참조한다.

고 비전문가를 전문가로 대체하는 작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충분한가의 문제다. 사실 통번역의 영역에서 비전문가와 전문가의 경계선은 흐려지고 있으며 통번역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한 ‘탁월한 비전문가’의 등장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sup>12)</sup> 게다가 난민통역의 본질상, 교육을 받지 않은 비전문가를 고용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전문직업화는 문제의 일부만 해결할 뿐이다. 크로닌은 지역사회통역연구가 통역사 양성, 인증 등 실무적 측면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삶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조건에 뿌리내린 모든 형태의 통역’을 아우르는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을 이를 것을 제안한 바 있다(Cronin 2002: 391). 그러한 문화적 전환은 아마도 실제 통역 현장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을 좀 더 고찰하는 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물음들은 기존의 난민통역 담론이 상대적으로 간과한 몇몇 지점을 드러낸다. 난민통역에 관한 학문적인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감안할 때 다소의 공백과 누락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소수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연구되어 온 난민통역을 이제 더 구체화, 세분화, 다변화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은 난민통역에서 고유하게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 3. 난민통역 고유의 문제들

난민통역을 지역사회통역이라는 상위범주에서 분리해서 살펴보면 몇 가지 고유한 쟁점들이 드러난다. 지면의 한계 상 본고에서는 이를 간략히 개괄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첫째는 희소어(exotic languages) 문제이다. 예멘 난민 사태에서 경험한 것처럼 난민통역 문제는 일차적으로 구사자 수가 적거나 희소한 소수어, 희소어 통역 문제와 종종 중첩된다. 소수어나 희소어의 통역 문제는 영어나 중국어처럼

12) ‘탁월한 비전문가의 등장’의 맥락, 비전문가 전문가 구분의 모호성에 대한 논의는 이향(2021)을 참고한다.

상대적으로 구사자가 많은 언어의 통역 문제와 다른 방식으로 제기된다. 즉, 구사자가 많은 언어의 경우 통역사의 역량 문제가 핵심이라면, 소수어의 경우 구사자의 확보 자체가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난민인권센터가 발표한 난민통역 수수료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 5월 31일 기준, 전체 통역수수료 비율에서 아랍어가 45%, 영어가 13%, 중국어가 12%, 우르두어가 11%인데, 이 중 ‘기타’가 19%를 차지한다(난민인권센터 2015. 7. 5.). 실제로 난민신청자의 국적별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난민신청자의 국적 중 상당수는 ‘기타’로 분류된다. 가령 2020년 총 6684건의 난민 신청 중 ‘기타’로 분류된 건수가 383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뒤이어 러시아(1064건), 카자흐스탄(603건), 중국(311건), 말레이시아(452건), 인도(420건) 순이다(난민인권센터 2021. 3. 9.).

예멘 난민심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아랍어의 경우, 국내 통번역대학원 개설 언어 중 하나이고 학부에도 전공으로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사자 확보에 애를 먹었다. 국내 어느 대학에도 전공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은 언어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해당 언어권에서 국내로 이주해 온 이주민이 통역에 투입된다. 그런데 이들은 법률용어와 통역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한국어 구사 능력도 크게 부족한 경우가 많다(김슬기 2013: 215). 해당 국가의 이주민조차 없는 언어의 경우 급한 대로 해당 언어 구사자가 있다면 그냥 투입될 수밖에 없다(Valero-Garcés 2010: 77). 그마저 여의치 않으면 심사관과 신청인이 공유하는 제3의 언어(대부분의 경우 영어)로 불완전한 소통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지점이 바로 난민통역 문제를 통역사 교육 및 인증 문제로만 좁혀서 접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통역 언어의 수요를 파악하고 해당 언어권의 통역사를 선발, 교육하는 데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난민통역의 본질상 어떤 언어의 수요가 언제 얼마나 많이 발생할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소수어, 희소어의 전략적 관리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언어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국가 간 네트워크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sup>13)</sup>

13) 가령 난민 통번역을 지원하는 앱 타짐리(Tarjimly)를 예로 들 수 있다. 타짐리는 페이스북 메신저 앱을 바탕으로 난민, 국제구호원, 통역자원봉사자를 연결시켜 주는 앱으로 2018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소말리아어를 비롯 16개 언어 통번역서비

둘째, 난민통역의 내용상 특수성 문제이다. 난민심사에 투입된 통역사는 난민인정 청구인의 생애 전반과 밀착된 가장 ‘사적’이면서도 ‘극적’인 내용을 통역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물론 국제회의통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사적이고 개인적인 내용을 통역해야 하는 상황은 여타 지역사회통역도 마찬가지이다(Hale 2007: 25-26). 그러나 생명의 위협과 박해를 피해 고국을 떠나와 낮은 나라에서 난민 인정을 신청한 청구인의 발화 내용은 때로는 통역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극단적 내용을 담고 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발화해야 하는 청구인이 면담 과정에서 자신의 박해 사실을 조리 있게 설명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Pöllabauer 2004: 146). 트라우마로 인해 자신이 경험한 박해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진술을 할 수도 있다(박순용 외 2020: 54). 한편 고문이나 가족의 죽음, 여타 가혹행위가 담겨 있는 진술을 통역하는 경험이 장기적으로 반복될 경우, 통역사가 감당해야 하는 심리적 정서적 스트레스는 일반적 통역에서의 인지적 부하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이미 고문생존자를 통역하는 통역사의 대리의상증후군이나 간접트라우마, 동정피로(compassion fatigue) 등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Fox and Gander 2004; Tipton and Furmanek 2016: 104). 학제적 협력을 통해 통역사의 정서적, 심리적 부하를 덜어줄 다양한 장치들을 모색하는 작업도 필요해 보인다.

셋째, 난민통역에서 고유하게 드러나는 권력의 비대칭성(asymmetry) 문제이다. 난민심사를 받는 청구인의 운명이 전적으로 난민 심의관에게 달려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이들은 취약한 대상(vulnerable population)<sup>14)</sup>에 속한다. “난민면담의 참여자들은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지 않으며, 면담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인해 면담 자체가 대부분의 신청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 나아가 불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김슬기 2013: 207-208). 물론 이러한 비대칭의 상황 역시 난민통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

스를 제공하며, 통역사와 사용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장혜진 2017. 2. 4.; 마이소사이어티 2018. 7. 6.).

14) 드루건은 영국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와 통번역사, 그리고 현장의 협업 과정에서 제기되는 윤리와 사회적 책임 문제를 논하며, 착취당한 아동,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vulnerable population”이라고 칭한 바 있다(Drugan 2017: 138).

다. 그러나 이주민, 탈북민, 외국인 노동자 등 우리 공동체 안의 타자 중에서도 난민은 분명 가장 낮고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으며, 난민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권력 불균형은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Kalina 2015: 72).

난민통역에 가담하는 심의관과 난민신청인 사이의 비대칭성은 통역의 방식, 통역사의 역할, 개입의 정도 등과 관련한 기존 논의를 상당 부분 무력화시킨다. 이러한 특수상황에 놓인 통역사는 참여 주체들이 상대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발화하는 국제회의통역 세팅에서는 제기되지 않는 또 다른 윤리적 질문 앞에 서게 된다(Kalina 2015: 73). 절대적 ‘약자’ 위치에 있는 난민신청인의 발화를 옮기는 통역사는 약자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통역사가 약자를 옹호(advocacy)할 수 있다면, 이는 통역사의 중립성 원칙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Kalina 2015: 76).

넷째, 이상의 논의들은 결국 통역사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로 귀결된다. 국제회의통역에서 통역사는 중립적 전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진 반면, 난민통역을 포함한 지역사회통역에서 통역사의 역할에 관해서는 여전히 여러 관점이 충돌한다. 한편에는 지역사회통역사가 어떤 가치판단이나 개입도 없이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발화를 중립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자여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다른 한편에는 통역사가 보다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거나, 혹은 이미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입장이 있다<sup>15)</sup>. 후자의 입장에 선 연구자들은 중립적 통역사라는 것이 일종의 허구라고 주장한다. 통역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변호사나 법원 공무원 등이 만들어 낸 신화라는 것이다(Hale 2011: 351). 통번역 교육기관에서 이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통역사를 중립적 존재로 계속 기술함으로써 이론적 처방(prescription)과 실제 현장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Angelelli 2004: 24).

다양한 형태의 ‘박해’를 경험한 트라우마 상태의 난민 청구인이 발화하는 내용을 충분한 사전정보 없이, 극단적 권력 비대칭의 상황에서 통역해 내는 일은 통역교육을 받은 전문통역사에게도 만만한 일은 아니다. 비전문가나 자원봉사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통역료를 받고 수행하는 통역이라고 해서 ‘쉬운’ 통역

15) 칼리나는 전자를 “conduit approach”로, 후자를 “cultural mediator approach”로 대별한다(Kalina 2015: 79).

은 아니다. 난민통역은 한마디로 고난이도의 극한통역(extreme interpreting)이다 (Tipton and Furmanek 2016: 104). 통역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이러한 특수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 4. 남겨진 과제

우리는 통역 행위가 복잡한 사회망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임을 종종 간과한다. 통역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수록 통역은 전적으로 언어 차원에서, 통역사의 언어능력이나 자질 차원에서만 논의된다. 그러나 한 사회에서 생산, 소비되는 통역 품질의 문제가 온전히 개인의 자질 문제일 리는 없다. 자질 없는 통역사가 중요한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시간당 5만 원이라는 턱없이 낮은 통역료를 포함하여 그런 선택을 허용하는 사회 전체의 구조 때문이다.

난민에 적대적인 사회 분위기는 당연히 난민통역에 영향을 미친다 (Pöllabauer 2004: 154). 처음으로 집단 난민을 경험한 2018년 당시 한국 사회의 반응은 그간의 다문화 교육이 무색할 만큼 격렬했다.<sup>16)</sup> 예멘이라는 낯선 국가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까지 더해져 인종주의에 가까운 차별적 발언이 난무했다.<sup>17)</sup> 난민심사에 참여했던 통역사 역시 이런 사회 분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칼리나는 난민통역에 얼마를 지불하는가가 그 사회의 윤리 수준을 드러낸다고 했다(Kalina 2015: 81). 우리 안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타자인 난민을 대상으로 한 통역은 그 사회 전체의 타자 윤리와 닮아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난민통역사에게 시간당 5만 원 이상의 통역료를 지불할 수 있을까?

결국 난민통역처럼 맥락의존적 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난민통역에 직접, 간접적으로 가담하는 수많은 주체들, 더 넓게는 공동체 전체의 인식

16) 예멘 난민 사태를 통해 본 한국 다문화 교육에 대한 비판적 논의로는 김진희, 이로미(2019)를 참고한다.

17) 2018년 6월에 게시된 난민수용 반대 국민청원, 정확히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시정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70만 명 이상이 서명하는가 하면, 난민환영 집회와 반난민 집회가 동시에 개최되기도 했다.

이 함께 변화해야 한다(Hale 2011: 347). 정부가 마침내 난민전문통역 관련한 제도적 준비를 시작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2018년 난민면접 과정에서 녹음 녹화가 의무화되었으며, 2019년에는 법무부가 난민전문통역인 운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2020년부터 난민통역 품질 평가 및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초에는 한국외대와 협업해 30개 언어에 대해 160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을 최종 인증했다.<sup>18)</sup> 그간 시민단체와 학계가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덕분이다. 그런데 통역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인증은 문제해결의 출발점일 뿐, 그 종착점은 아니다.

난민통역 문제가 난민이라는 타자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식과 분리될 수 없다면, 난민통역 연구 역시 통번역학만의 몫은 아니다. 난민법, 난민정책, 다문화교육, 타자철학, 지역학, 인류학, 법학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학제적 논의와 조망이 필요하다.

그동안 학계는 의료통역, 법정통역, 난민통역, 이주민통역 등 다양한 유형의 통역을 관통하는 공통분모에 집중하면서 통역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찰해 왔다. 이제는 회의통역 외의 통역 현장을 좀 더 다양하게 관찰하면서 기존 논의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한 작업에 제한적으로나마 기여하려는 마음으로, 그리고 난민통역이 제기하는 특수한 문제를 개괄하려는 의도로 시작된 본 연구는 많은 질문을 던졌으나, 그 질문에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 지면의 한계로 개괄적으로만 언급된 질문에 답하는 것은 연구자의, 그리고 바라건대 통번역학계의 추후 과제로 남는다.

가령 언어별 현실을 감안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번역 전공자 유무, 전공학과 개설 여부, 이주민 규모 등에 따른 언어별 상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문화 연구, 다문화정책 등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18) 난민전문통역인의 언어구성은 아래와 같다. 중국어 34명, 영어 29명, 러시아어 18명, 아랍어 9명, 우즈베크어 7명, 베트남어 7명, 몽골어 5명, 벵골어 4명, 프랑스어 4명, 네덜어 4명, 우르두어 3명, 타갈로그어 3명, 상할리어 3명, 인도네시아어 3명, 터키어 3명, 힌디어 3명, 포르투갈어 2명, 말레이어 2명, 스와힐리어 2명, 카자흐어 2명, 스페인어 2명, 타밀어 2명, 페르시아어 2명, 미얀마어 1명, 키르기스어 1명, 말라얄람어 1명, 친어 1명, 캄보디아어 1명, 일본어 1명, 트위어 1명(임혜령 2022. 1. 19.).

통번역사의 심리정서적 부하 문제의 경우, 난민통역뿐 아니라 분쟁상황에서의 통역, 유엔난민기구나 시민단체<sup>19)</sup>가 수행해 온 난민통역인 지원 활동, 통역사 직업윤리 규정 등에 관한 다수의 해외 연구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권력의 비대칭 문제 관련해서는, 번역학에서 개진되어 온 권력, 이데올로기 관련 담론을 참조하고 면대면 통역을 사회적 상호작용의 일종<sup>20)</sup>으로 고찰한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역사의 역할 관련하여 국제회의통역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다양한 통역 현장의 경험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간 난민통역을 수행해 온 통역사의 체험, 통역사용자의 피드백 등을 심층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해야 할 것이다.

국제회의통역, 강대국 언어의 통역, 전문통역사들의 통역을 연구하는 데 집중해 온 통역학은 이제 지역사회통역, 소수어의 통역, 비전문가의 통역을 아우르며 성장할 수 있을까? 통역연구는 가야흐로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한복판에 놓인 듯하다.

### 참고문헌

- 강지혜 (2009) 「이주민을 위한 지역사회통역에 대한 연구」, 『번역학연구』 10(4): 9-39.
- 곽중철 (2010) 「2009년 한국 제1기 의료통역사 교육 사례 연구」, 『번역학연구』 11(1): 7-43.
- 김순미 (2018) 「한국형 의료통역 연구: 의료관광통역과 다문화 의료통역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9(2): 7-37.
- 김슬기 (2013) 「난민임의 의사소통적 구성: 국내 난민면담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법과사회』 45: 193-231.

19) 난민/이주민 통역활동가들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활동을 하는 국내 비영리 단체로 <호모인테르>가 있다.

20) 바텐쇼우가 참고한 고프만(Goffman 1981) 등을 언급할 수 있겠다.

- 김진아 (2008) 「법정통역의 실태와 향후 과제」, 『통번역학 연구』 11(2): 21-37.
- 김진희, 이로미 (2019) 「세계시민성 관점에서 본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와 한국 다문화교육의 과제」, 『다문화교육연구』 12(3): 37-64.
- 박순용, 서정기, 박진숙 (2020) 『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서울: 집문당.
- 베이커, 모나 (2009) 『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한국번역학회 옮김), 서울: 한신문화사.
- 이주희 (2020) 「공향난민의 의사소통 문제와 언어인권」, 『사회언어학』 28(4): 155-189.
- 이지은 (2011) 「사법인들과 통역인들의 사법통역 규범에 관한 인식 연구」, 『번역학연구』 12(3): 197-224.
- 이지은 (2012a) 「난민재판 통역의 질에 대한 고찰: 통역인의 역할에 관한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4(1): 213-236.
- 이지은 (2012b) 『다문화사회의 사법통역』, 서울: 집문당.
- 이지은 (2017) 『사법통역의 이론과 실제: 경찰 통역에서 난민 통역까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 이향 (2021) 「샤론최 아바타가 아닌 파트너」, 『인문언어』 23(1): 33-53.
- 장애리 (2014) 「다문화사회와 지역사회통역 - 지역사회통역사로서의 결혼이민 여성: 잠재력과 한계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5(1): 211-238.
- 정철자 (2015) 「의료통역 교재내용 구성을 위한 의료담화 사례연구」, 『번역학 연구』 16(2): 272-292.
- 정철자 (2020) 「국내 사법통번역 인증평가 사례연구: 윤리의식 평가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4(2): 20-227.
- 정혜연 (2009) 「법정통번역 교육」, 『번역학연구』 10(2): 181-206.
- 홍서연 (2018) 「국내 사법통역 교육의 현황 및 제언」, 『통번역학연구』 22(2): 207-231.
- Angelelli, Claudia (2004) *Revisiting the Interpreter's Role*,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Baker, Mona (ed.) (1998)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first ed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aker, Mona (2006) 'Non-Cognitive Constraints and Interpreting Strategies in Political Interviews', in Karl Simms (ed.) *Translating Sensitive Texts*, Amsterdam and Atlanta: Rodopi, 111-129.
- Barsky, Robert F. (1994) *Constructing a Productive Other*,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Berk-Seligson, Susan (1990) *The Bilingual Courtroom: Court Interpreters in the Judicial Proce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ronin, Michael (2002) 'The Empire Talks Back: Orality, Heteronomy and the Cultural Turn in Interpreting Studies', in Franz Pöchhacker and Miriam Shlesinger (eds) *The Interpreting Studies Reader*, London: Routledge, 387-397.
- Drugan, Joanna (2017) '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Practice: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Engaging with and beyond the Professions', *The Translator* 23(2): 126-142.
- Fox, Annemarie and Jill Gander (2004) *Interpreting for Survivors of Torture*. Available at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37218966\\_Interpreting\\_for\\_Survivors\\_of\\_Torture](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37218966_Interpreting_for_Survivors_of_Torture).
- Goffman, Erving (1981) *Forms of Talk*,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Hale, Sandra (2007) *Community Interpreting*,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Hale, Sandra (2011) 'Public Service Interpreting', in Kirsten Malmkjaer and Kevin Windle (eds) *The Oxford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New York: Oxford UP, 343-356.
- Hermans, Theo (2009) 'Translation, Ethics, Politics', in Jeremy Munday (ed.) *The Routledge Companion to Translation Studies*, New York: Routledge, 93-105.
- Inghilleri, Moira (2009) 'Asylum', in Mona Baker and Gabriela Saldanha (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secon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0-13.
- Inghilleri, Moira and Katrijn Maryns (2009) 'Asylum', in Mona Baker and

- Gabriela Saldanha (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thir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2-27.
- Kalina, Sylvia (2015) 'Ethical Challenges in Different Interpreting Settings', *MonTI* 2: 63-86.
- Pöllabauer, Sonja (2004) 'Interpreting in Asylum Hearings: Issues of Role, Responsibility and Power', *Interpreting* 6(2): 143-180.
- Rudvin, Mette (2007) 'Professionalism and Ethics in Community Interpreting: The Impact of Individualist versus Collective Group Identity on Interpreting Performance', *Interpreting* 9(1): 47-69.
- Schäffner, Christina (ed.) (2004) *Translation Research and Interpreting Research: Traditions, Gaps and Synergies*, Clevedon, Buffalo, Toronto: Multilingual Matters.
- Tipton, Rebecca and Olgierda Furmanek (2016) *Dialogue Interpreting: A Guide to Interpreting in Public Services and the Commun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Valero-Garcés, Carmen (2010) 'The Difficult Task of Gathering Information on PSI&T', *Babel* 56(3): 199-218.
- Wadensjö, Cecilia (1998) *Interpreting as Interaction: On Dialogue Interpreting in Immigration Hearings and Medical Encounters*, London: Longman.

<인터넷 자료>

- 기민도 (2019. 12. 2) 「무슬림 종파 바뀌고... 목숨 건 세레 빼먹고... 난민심사 흔드는 '강통 통역」,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03012005>에서 2021년 9월 1일 검색.
- 김호천 (2017. 12. 13) 「에어아시아 익스, 제주~쿠알라룸푸르 직항 주 4회 운항」,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71213172900056>에서 2021년 9월 1일 검색.
- 난민인권센터 (2015. 7. 5) 「난민 통역 수수료 집행 내역 (2015. 5. 31)」. <https://nancen.org/1404>에서 2021년 9월 1일 검색.
- 난민인권센터 (2021. 3. 9) 「[통계] 국내 난민 현황 (2020. 12. 31 기준)」.

- <https://nancen.org/2166>에서 2021년 9월 1일 검색.
- 마이소사이어티 (2017. 7. 16) 「난민을 위한 실시간 통번역 앱 ‘타집리’」.  
[http://www.bizion.com/bbs/board.php?bo\\_table=social&wr\\_id=383&sca=Social+Innovation](http://www.bizion.com/bbs/board.php?bo_table=social&wr_id=383&sca=Social+Innovation)에서 2021년 9월 1일 검색.
- 법무부 난민과 (2019. 12. 5) 「무슬림 종파 바뀌고...난민심사 혼드는 ‘강통통역’ 보도관련」. <http://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15/516379/articleView>에서 2021년 9월 1일 검색.
- 유엔난민기구 (2016. 8. 30). 「‘난민’과 ‘이주민’ - 자주 묻는 질문 (FAQ)」.  
<https://www.unhcr.or.kr/unhcr/program/board/detail.jsp?boardTypeID=8&searchSelect=&keyWord=&currentPage=1&menuID=001006001002&finishIsYN=&boardID=7687&boardCategory=%EA%B3%B5%EC%A7%80&mode=detail>에서 2021년 10월 1일 검색.
- 이재호 (2018. 7. 23) 「난민을 불법취업자로 둔갑시키는 통역사들」, 『한겨레21』.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678.html](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678.html)에서 2021년 9월 1일 검색.
- 임혜령 (2022. 1. 19) 「부실면접 막아 난민 피해 없게...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시행」, 『법조신문』.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4127>에서 2022년 4월 20일 검색.
- 장혜진 (2017. 2. 4) 「타집리(Tarjimly), 난민 위한 번역 애플리케이션」,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441>에서 2021년 11월 6일 검색.

[Abstract]

### **Interpreting for Asylum Seekers: Issues and Perspectives**

Hyang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sudden arrival of 500 Yemeni refugees in South Korea in 2018 sparked several debates over the country's response to the influx, including the quality of interpreting conducted during the asylum process. The incompetence and implicit bias of interpreters involved in the asylum interview process, in particular, were criticized by local press and civic groups. This paper focuses on the complexity of interpreting for asylum seekers, where low-paid non-professionals are often hired to translate highly sensitive discourse, a topic largely underexplored i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in Korea. Local research on interpreting for asylum seekers has mostly been done within the framework of community interpreting. While valuab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concerning legal interpreting, medical interpreting, the training and accreditation of community interpreters, and the integration of migrants in a multicultural society, few studies examine the specificities of interpreting for asylum seekers, which is often performed in a complicated, high-stress environment. This paper thus identifies important considerations in studying interpreting for asylum seekers: interpreting needed outside of legal settings, the realities of interpreting from exotic languages, the vicarious trauma of interpreters exposed to highly distressing experiences of applicants, and the power imbalance between participants in asylum interviews. Only with such a holistic approach, as opposed to concentrating on the ineptitudes of the individual interpreter, can we begin to understand and address the challenges of this urgent societal and academic issue.

Keywords: asylum, Yemeni refugees, community interpreting, ethics for interpreters,  
legal interpreting

주제어: 난민통역, 지역사회통역, 통역윤리, 예멘 난민, 사법통역

이향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학과 교수

leehyangmarina@gmail.com

관심분야: 통번역 윤리, 지역사회통역, 난민통역, 번역학의 역사

논문투고: 2022년 5월 1일

1차심사 완료: 2022년 5월 24일

2차심사 완료: 2022년 6월 13일

게재 확정: 2022년 6월 18일